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473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4043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47327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서하운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하영삼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1. 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8. 접수 제10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3. 9. 12.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5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14. 9. 11.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B는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0,000,000원 대출을 받았다. 그 후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금액은 36,550,000원, 보증기한은 2108. 9. 7.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8. 위 은행으로부터 B가 2017. 12. 6.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았고, 2017. 12. 28. B를 대위하여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36,564,788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82852호로 대위변제금 36,564,788원, 확정손해금 90원, 대지급금 257,564원과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36,822,442원과 그중 36,564,788원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2019. 4. 1.부터 위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 72,9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9. 12. 25.

B에게 송달되어 2020. 1. 9. 확정되었다.

라. B는 2019. 1. 8. 피고와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9. 접수 제1098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98,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한편, B는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2017개회40387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8. 4. 26.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절차에서 2019. 1. 31.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2017. 11. 13. 기준 회생채권액이 306,555,581원(원고의 구상금채권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개인회생절차는 2019. 6. 11. B의 신청취하로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7. 12. 28. 대위변제에 의하여 발생한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2. 29. B에게 카탈로그 제작을 의뢰하고 19,7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관계 외에 B와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는 없다. B는 2018. 8.경 피고에게 콩고 대선과 관련하여 모자와 유니폼 제작계약을 주선해 주겠다면서 100,000,000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만일 위 제작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B의 요청을 받아들인 피고는 2018. 8. 16. 피고의 대표이사 계좌에서 35,000,000원, 2018. 8. 16. 주식회사 D 계좌에서 15,000,000원, 2018. 8. 20. 피고의 대표이사 계좌에서 30,000,000원, 같은 날 피고 계좌에서 2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B가 추진하는 모자 · 유니폼 제작계약은 성사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9. 18. 주식회사 D에게 15,000,000원을 반환하고, 콩고 대선(2018. 12. 30.) 전후로 B에게 대여금 100,000,000원을 반환하든지 아니면 당초 약속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B는 2019. 1. 8. B가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일자를 2021. 8. 20.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B와 간헐적인 사업관계 외에 특별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점, 피고가 샘플을 제작하는 등 모자 · 유니폼 제작계약이 실제로 추진되었고, 대여금 100,000,000원이 실제로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여금 100,000,000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인 점, 만일 피고가 B에게 2017. 12. 28.경 보증사고가 났다는 사실이나 B가 2017. 11. 24.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B와 2017. 12. 29. 카탈로그 제작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인 피고가 특별한 인적 관계도 없고 2017. 12. 29. 카탈로그 제작계약 외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B에게,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콩고 대선 관련 모자·유니폼 제작계약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근거자료도 없이 막연히 콩고 관계자와 '워터펌프' 관련 계약을 교섭하고 있다는 B의 말만 믿고,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과 다른 회사의 자금까지 끌어들여 100,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대여금 또는 투자금(피고가 B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는 최초 '투자금'이라고 하였다가 '알선 명목의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는 '송금 당시에는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였다가 B가 알선한 계약이 무산되자 이를 대여금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다시 변경하였다)으로 송금하였고, 송금 당시에는 투자계약서나 차용증 등 그 돈의 반환에 관한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았다가 수개월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재은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철근콘크리트벽돌조 칼라아스팔트 성균4층 다세대주택(8세대)및근린생활시설

1층 130.38㎡

2층 129.60㎡

3층 113.40㎡

4층 81.76㎡

지층 126.7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 2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72.4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38분의 32.60

- 이상 서울특별시방법원 등기국 판함 -

